2015년도 임금 · 단체협약 잠정합의서

1. 임금협약

가. 임금인상은 2014년도 총액 인건비 대비 5.2% (호봉승급분 1.4%) 인상

나. 호봉확대 : 30호봉 → 33호봉(1~4급 적용)

다. 2016.1.1.부터 일반직 전직원에 대한 임금피크제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며, 세부사항은 별도 임금피크제 운영내규에 의한다.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1년차</th><th>2년차</th><th>3년차</th></tr>
<tr><td colspan="2">감액율</td><td>8%</td><td>12%</td><td>25%</td></tr>
<tr><td rowspan="2">직급
보직</td><td>1~2급</td><td rowspan="2">현행유지</td><td>전문위원</td><td rowspan="2">공로연수 또는
전문위원</td></tr>
<tr><td>3급이하</td><td>현행유지 또는
전문위원</td></tr>
<tr><td colspan="2">임금인상</td><td colspan="3">호봉 및 기본연봉 동결
(단, 정책인상률은 적용)</td></tr>
<tr><td colspan="2">승진 및 승급</td><td colspan="3">불가(단, 현행유지시 승진은 가능)</td></tr>
<tr><td colspan="2">성과급</td><td colspan="3">현행과 동일하게 평가 후 지급
(단, 공로연수시 지급 불가)</td></tr>
<tr><td colspan="2">퇴직금</td><td colspan="3">임금피크 직전년도 기준으로
중간정산 후 매년 정산</td></tr>
</table>

※ 감액율은 임금피크제 직전년도 기본연봉(기본급) 감액율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조정

2. 단체협약

가. 일반직의 정년은 2015년까지 59세, 2016년부터는 60세로 한다.

나. 정년퇴직 기준일을 정년에 달한 날이 속한 연도의 12월 31일로 한다.

다. 직원이 장기근속 시,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라 특별 휴가를 실시한다.

라. 공사는 연2회 체육행사 또는 체험활동 시행에 적극 협조한다.

마. 공사는 생체인식기기 및 정보기술 등을 이용한 감시장치의 설치·운영은 불가하며, 직원의 안전·도난방지·위험 및 사고예방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조합과 충분한 사전 협의 후 시행할 수 있다.

바. 조합임원 및 간부·대의원 인사시 조합과 사전협의하고, 직원의 감원, 공사의 분할·합병·양도시에는 노사간 충분히 협의하여 의견일치가 이루어진 후 실시한다.

사. 단체협약 제6조 중 조합원 범위를 일반직 직원으로 한정하되, 유니온숍으로 한다.

아. 단체협약 제11조, 제12조의 조합전임자 및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업무 및 대우 등을 명확히 하여 개정한다.

자. 단체협약 제43조 중 퇴직금지급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다.

차. 단체협약 제82조, 제85조, 제89조의 노동쟁의 및 쟁의행위와 관련된 용어를 관련법령에 맞추어 명확히 한다.

카. 단체협약 제56조(보건,태아검진,산전후 휴가) 중 조산·유산 또는 사산 휴가의 기간은 관련법령에 의한다.

타. 단체협약 제48조(유급휴일) 중 노동조합창립일 제외 : <부결>

파. 우대승진 폐지 또는 개선 : <부결>

하. 단체협약 제63조1(치료비부담) 산재처리시 비급여 부분 지급 폐지 : <부결>

3. 규정개정 등 절차이행

가. 노사가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규정 및 단체협약 등의 개정·승인 절차를 이행한다.

4. 임금 및 단체협약 적용시기

가. 2015. 1. 1.부터 적용 : 임금협약 가호

나. 2016. 1. 1.부터 적용 : 임금협약 나호 ~ 다호, 단체협약 가호 ~ 카호

2015. 12 . 16.

대 전 도 시 공 사 대표교섭위원 박 남 일 (인)

대전도시공사노동조합 대표교섭위원 도 형 남 (인)